

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(제121조 관련)

1.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- 나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- 라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비고: 휘발유·경유·바이오디젤 검사대행기관과 LPG·CNG·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, 두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나. 검사장비

1) 휘발유·경유·바이오디젤(BD100)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	검사대상유종
1	가스크로마토그래피(Gas Chromatography)	1식	휘발유 바이오디젤
2	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	1식	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
3	황함량분석기(Sulfur Analyzer)	1식	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
4	증기압시험기(Vapor Pressure Tester)	1식	휘발유
5	증류시험기(Distillation Apparatus)	1식	휘발유 경유
6	액체크로마토그래피(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)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 (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)	1식	경유
7	운환성시험기(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)	1식	경유
8	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	1식	경유 바이오디젤
9	잔류탄소시험기(Carbon Residue Apparatus)	1식	경유 바이오디젤
10	동점도시험기(Viscosity Tester)	1식	바이오디젤
11	회분시험기(Furnace)	1식	바이오디젤
12	전산가시시험기(Acid Value Tester)	1식	바이오디젤

13	산화안정도시험기(Oxidation Stability Tester)	1식	바이오디젤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

2) LPG · CNG · 바이오가스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	검사대상유종
1	가스크로마토그래피(Gas Chromatography)	1식	LPG CNG 바이오가스
2	황함량분석기(Sulfur Analyzer)	1식	LPG CNG 바이오가스
3	증기압시험기(Vapor Pressure Tester)	1식	LPG
4	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	1식	LPG
5	동판부식시험기(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)	1식	LPG
6	증발잔류물시험기(Residual Matter Tester)	1식	LPG
7	불활성가스시험기(Inert Gas Tester)	1식	CNG 바이오가스
8	수분시험기(Moisture Tester)	1식	바이오가스

비고: 휘발유 · 경유 · 바이오디젤 검사대행기관과 LPG · CNG · 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2.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- 나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- 라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비고: 휘발유용 · 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,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나. 검사장비

1) 휘발유용 · 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

가)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
1	제1호나목1)에 따른 장비 중 휘발유 또는 경유를 대상유종으로 하는 검사장비	각 1식
2	회분시험기(Furnace)	1식

3	용해도측정기(Funnel and Filter Holder)	1식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나) 유해중금속 검사장비

검사장비		수량
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		1식

다) 배출가스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	비고
1	차대동력계	1식	휘발유, 경유 공용
2	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	2식	휘발유용, 경유용 각 1식
3	배출가스 분석장치	2식	휘발유용, 경유용 각 1식
4	자료처리 장치	1식	휘발유, 경유 공용
5	그 밖의 부속장치	1식	휘발유, 경유 공용
6	원동기동력계	1식	경유 전용
7	매연 측정기	1식	경유 전용

2) LPG용 첨가제 검사장비

가) 배출가스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
1	차대동력계	1식
2	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	1식
3	배출가스 분석장치	1식
4	자료처리 장치	1식
5	그 밖의 부속장치	1식

나)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중금속 검사장비: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장비는 제1호나목 2)와 같고, 유해중금속 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.

검사장비		수량
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		1식

비고: 휘발유용·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과 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3.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- 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- 나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- 라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

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나. 검사장비

순번	검사장비	수량	비고
1	요소함량분석기(Total Nitrogen Analyzer)	1식	
2	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	1식	
3	분광광도계(UV/Vis Spectrophotometer)	1식	
4	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	1식	
5	굴절계(Refractometer)	1식	Abbe 방식
6	자동적정기(Auto Titration) 또는 적정기(Titration)	1식	
7	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	1식	